

退溪 李滉의 家系와 生애**

李 秉 杰*

• 目 次 •

I. 緒 言	2. 그의 官歷과 관직관
II. 이황의 家계	3. 그의 현실참여
III. 이황의 生애	IV. 結 語
1. 그의 성품과 생활태도	

I. 緒 言

퇴계 이황은 조선조의 연산군 7년(1501)에서 선조 3년(1570)까지¹⁾ 생존한 성리학자로서, 후배 학자인 율곡 이이와 더불어 흔히 조선조 성리학계의 두 거봉으로 숭앙되는 인물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학문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이미 많은 업적을 남겨 놓고 있고, 또 그의 생애에 관하여도 거의 상식에 속한다 할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가 새삼스럽게 시도되는 것은 심오한 그의 성리학의 철리를 재검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생애를 통

* 경북대 역사교육과 교수

** 경북대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장간호(1973) 게재논문

1) 이황의 卒年에 대하여는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退溪先生年譜의 기록에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實錄이 선조 2년 12월 辛丑으로, 修正實錄이 선조 3년 12월 甲午로, 年譜가 선조 3년 12월 辛丑으로 잡은 것이 그것이다. 本稿에서는 年譜의 기록에 따랐다.

하여 看取되는 성품·생활태도라든가, 관직관·현실참여 따위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구명해 보자는 극히 소박한 목적에서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제의 성격으로 보아서 전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기가 대체로 주인공의 생애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관찰·서술하는 폐단이 있고, 또 그를 역사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그와는 별 관련이 없는 존재처럼 파악함으로써 그의 언행 따위 일체를 미화하는 폐단이 많은 것처럼, 이황의 생애에 관한 종래의 연구도 그러한 과오를 범한 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이황을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역사 속에서 파악하고, 또 그를 그의 시대와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참 모습에 보다 가까운 그를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황의 가계

퇴계선생 世系圖에 의하면, 그의 선조는 여말의 향리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그의 6대조인 李碩은 眞寶縣吏로서 司馬試에 합격은 하였으나 官歷上에는 별 다른 변동이 없이, 후일 아들 李子脩로 인하여 奉翊大夫 密直使를 追贈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密直使는 密直司의 착오일 것이고, 봉익대부는 종2품이므로 그는 아마 判司事·司事·知司事·簽書司事·同知司事 중 어느 관직을 추증받았을 것이다. 5대조인 李子脩는 明書業 출신으로 通憲大夫 判典儀寺事에 이르렀는데, 공민왕 10년(1361) 그는 鄭世雲의 裨將으로 홍건적 토벌에 종군하여 수도를 회복한 공로로 安社功臣(二等)의 호를 하사받고 松安君에 봉해졌다. 다음 4대조인 李云侯는 관직이 中訓大夫 軍資寺副正에 이른 이로서, 후일 曾孫 李堦로 인하여 通訓大夫 司僕寺正을 추증받았다. 3대조인 李禎은 蔭補로 知印이 되면서 출발하여 관직이 中直大夫 善山府使에 이른이로서, 후일 손자인 이우와 증손인 이황으로 인하여 通政大夫 兵曹參議와 嘉善

大夫 戶曹參判 겸 同知義禁府事를 각각 추증받았다. 조부인 李繼陽은 進士試 출신으로 현직의 경력은 없었고, 후일 아들 이우 및 손자 이황으로 인해 嘉善大夫 兵曹參判과 資憲大夫 吏曹判書 겸 知義禁府事를 각각 추증받았다. 父 李埴 역시 진사시 출신으로 현직의 경력은 없이, 아들 李澗와 이황 덕분에 嘉善大夫 兵曹參判과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겸 判義禁府事를 각각 추증받았다.²⁾

이로써 보면 이황의 가계는 여말의 향리에서 출발하여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양반으로서의 門地를 굳힌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양반층 속에는 그 가계의 淵源이 고려 중기 이후의 향리신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고려시대의 관인층은 文·武와 吏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吏는 문반·무반처럼 독립적인 班行을 갖지 못하고 문반 속에 흡수됨으로써 양반체제 속에 해소된 신분으로 행정의 말단실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文蔭 출신과 吏族 출신의 두 계열로 구성되는 이들 吏는 고위관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신분이었던 까닭에 무신집정시에는 문반과 동일시 되었으며, 이를 전기로 문반과 吏族의 융합이 진행되어 후일 『能文能吏』의 신관인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吏族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의 향리층은 대거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종래의 문반, 무반과는 형을 달리하는 『士大夫』란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이야말로 곧 조선왕조 권력구조의 주축을 이룬 양반으로 연결되었던 신분이다.³⁾

이황의 선조는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향리층에서부터 사대부 계급에 까지 신분상승을 이룩하여 조선왕조의 양반의 반열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의 가계가 양반신분으로서의 門地를 확고하게 다진 것은, 개국에 참여한 공신의 가문을 제외한 조선왕조의 여타 가문이 대개 그러하였듯이, 그 자신을 계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황은 학문의

2) 退溪先生年譜 卷首 退溪先生世系之圖(退溪全書 下冊 所收) 및 椽曹龜鑑 卷2, 觀感錄 參照

3)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대하여 (歷史學報 23輯) 參照

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직의 경력으로써도 그의 가문을 비약시킨 획기적인 인물이었다.

前掲의 世系圖에는 이황의 선조 뿐만 아니라, 그의 13대손까지에 이르는 후손의 계보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마 왕조시대에 생존한 일이 없는 세대가 적어도 두 세대는 포함되어 있으리라 짐작된다. 여하튼 그것에 의하면, 그들 후손의 과거경력은 生員試 합격자 8인, 進士試 합격자 4인, 文科 급제자 32인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현직경력은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나 있다.

品階	官職	人數	品階	官職	人數	品階	官職	人數	
從1品	判義禁府事	1	正4品	應教	3	從6品	主簿	1	
正2品	知中樞府事	1	從4品	僉正	1		縣監	7	
從2品	參判	7		郡守	5		察訪	1	
	大司憲	1		副護軍	4	從7品	童蒙教官(教授?)	1	
	漢城右尹	1	正5品	校理	4	從7品	直長	1	
	同知中樞府事	1	從5品	判官	1	從9品	參奉	10	
	副總管	1		都事	2		監役	3	
正3品	參議	2		別坐	1	小計		93	
	承旨	6		縣令	1			生員	8
	大司成	1	正6品	佐郎	1			進士	4
	僉知中樞府事	15		司書	1			文科(官職未詳)	1
	都正	2		正言	3		總計		106
	牧使	2		翊贊	1				

生員試 및 進士試 합격자는 현직에 사환하지 않았고, 문과 급제자 32인 중 31인은 현직의 경력이 있으며 나머지 1인은 미상이다. 그들 전체의 현직경력은 위의 문과 급제자 31인을 포함하여 모두 93인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 가운데 62인은 蔭仕에 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현직 仕宦者의 삼분지일이 문과 급제자이고 나머지 삼분지이가 蔭仕者이니, 蔭仕者는 문과 급제자의 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이황을 계기로 하여 그의 가문이 조선조의 양반층 속에 확고히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의 표를 볼 때, 이황의 후손 가운데는 먼저 관직의 경력에 있어서 그의 수준을 넘어선 인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음 그들의 관직 경력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서 영남의 사림과 가운데서는 비교적 우월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하겠으나, 전체 양반층 속에서 볼 때는 그리 대단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은 비단 이황의 가계 뿐만 아니라, 영남의 양반 전체의 공통적인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작용한 것 같다. 첫째, 조선 중기이후 표면화한 당쟁으로 인하여 영남의 남인계열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관계 진출이 거의 無望하였다고 할 정도로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영남의 남인들은 사림파적 의식이 강렬하여 관계 진출보다는 성리학의 학리탐구에 더 큰 보람과 의의를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이 곧 그것이다. 그런 까닭에 영남의 남인계열에서 혁혁한 관직을 자랑할 만한 고관대작은 많이 나오지 못하였으나, 이황에 의해 열려진 성리학의 문호는 그런대로 손색없이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황의 후손 가운데 蔭仕者가 많다는 사실도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들 대개가 당초부터 관직에 뜻을 둔 인물들은 아니었을 것이나, 같은 당색의 인물들이 집권하고 난 뒤 자기 당의 세력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자기 당색의 인물을 많이 기용하였을 경우에 관직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이황의 가계는 그 자신에 의해 양반층 속에 확고히 정착되었고, 이후도 대성리학자로서 이룩해 놓은 그 자신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의해 유지, 보전되었을 뿐, 학문적인 면에서도 그의 학통을 이을 만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였고, 관직면에서도 그의 수준을 넘어선 인물은 나오지 못하였다. 물론 그 원인이 전혀 그들 후손의 무능에 있었던 것만은 결코 아니고, 조선왕조사가 지니는 내면적인 복잡성에서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Ⅲ. 이황의 생애

1. 그의 성품과 생활태도

이황의 문인 趙穆이撰한 言行總錄에는 “선생은 천자가 穎悟하고 神彩가 정명하였다. 성품은 어려서는 端慤하여 戲弄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자라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도의로써 수양하였던 까닭에 총명·정직하고 효제·충신하였으며, 精溫·純粹하여 모가 나는 언행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기질은 온화하면서도 強毅하고, 언사는 완곡하면서도 직선적이었다. 학식은 해박하면서도 요령이 있었고, 행동은 온전하면서 독실하였다. 淸淨하되 과격하지 않았고, 참여하되 굳이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았다. 옛 것을 흠모하되 그에 壅滯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처해 살되 세속에 흐르지 아니하였다.”⁴⁾라고 하여 이황의 사람됨이 간결하고 요령있게 평설되어 있다.

性 品	典 據	性 品	典 據
氣質英明	明宗實錄14, 8년 4월 己亥條	性明潛溫謙	明宗實錄32, 21년 2월 丁丑條
天性疎淡	明宗實錄14, 8년 6월 辛卯條	天資純粹	明宗實錄33, 21년 6월 甲戌條
爲人淸簡	明宗實錄17, 9월 12일 己卯條	天資純美雅意恬靜	宣祖修正實錄4, 3년 12월 甲午條
爲人淸修高節	明宗實錄18, 10년 5월 己亥條	道成德立愈執謙虛	宣祖修正實錄4, 3년 12월 甲午條
天性溫粹	明宗實錄25, 14년 6월 辛丑條	正大明白	宣祖修正實錄4, 3년 12월 甲午條
性疎淡寡慾	明宗實錄31, 20년 4월 乙酉條		

4) 退溪先生言行通錄 卷1, 退溪先生年譜 卷3 附錄 및 陶山及門諸賢錄 卷首
 先生 天資穎悟 神彩精明 性幼端慤不喜狎弄 長好學問 養以道義 故聰明正直 孝悌忠信 而精純溫粹 不露主角 氣和而毅 辭婉而直 學博而要 行全而篤 淸而不激 介而不矯 慕古而不滯 處世而不流

한편 조선왕조실록에 산견되는 그의 성품을 摘錄해 보면 앞의 표와 같다. 위의 두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의 성품은 疎淡·淸簡·淸修·溫粹·純粹·純美·溫謙·謙虛·恬靜·明白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품은 이황을 학자로서 대성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을 지닌 관리가 될 수 있는 성품으로는 그리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의 관리는 때로는 군주의 의견에 추종하여 맡은 바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소극성과 沈潛性을 지녀야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군주의 의견에 맞서서 자기의 소신이나 경륜을 과감하게 관철시키는 적극적인 진취성과 불굴의 투쟁의식도 지녀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황처럼 현실에 『참여하기는 하여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는』 성품은 관리로서 지녀야 할 것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가 관직을 굳이 마다하고 鄉曲에 묻히고자 한 것이나, 時務에 별 관심이 없어 時弊의 釐正이나 현실의 개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의 시대가 지니고 있었던 특수성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 자체에서 기인한 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성품은 그의 생활태도 내지 생활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못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거꾸로는 그러한 생활태도 속에서 그의 천성은 후천적으로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가령 恬靜한 그의 성품은 “여럿이 있을 때 그는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혹은 책을 보면서 혹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면 보냈지, 한가한 대화나 잡담을 하는 일은 없었다”⁵⁾거나, 혹은 “평소에 있을 때도 衣帶를 단정히 하였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지라도 조금도 게으름을 부리는 적이 없었다”⁶⁾고 할 정도로 항상 조심스럽게 삼가는 생활태도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겸허한 그의 성품은 비록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布衣와 다를

5) 同上條

其群居 斂衽端坐 或觀書 或靜默 以終日 未嘗爲閑話雜說

6) 明宗實錄 卷18, 10年 2月 癸未條

平居 正衣冠 坐雖暗室 未嘗少倦

바 없을 정도로 소박하고 겸허한 그의 생활태도를 낳았다.⁷⁾ 그는 도덕이 날로 성장해 갈수록 더욱 겸허한 자세를 지니려고 노력하였는데⁸⁾ 그가 운명하기에 앞서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뒤 예조에서 관례에 따라 요청할 禮葬을 固辭할 것과 묘소에는 碑碣을 세우지 말고 조그마한 돌에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새길 것을 당부한 것에서⁹⁾ 그것은 더욱 잘 드러난다.

그는 늘 초야에 뜻을 두어, 매양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해서는 산림에 집을 짓고 성리학의 연구에 전념하였을 뿐,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현실적인 榮進을 할 수 있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을 정도로 순수·소박하고 독실한 생활로써 평생을 일관해 왔다.¹⁰⁾ 그래서 그는 불평이 있어도 잊어버리려고 힘써 마음에 남겨두지 않았으며, 영리의 추구나 가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까닭에 한 섬(石)의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서도 늘 裕足한 듯이 생활하였다. 또 衣帶가 없어서 上司가 곁옷한 벌을 주어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즐겨 감내하였다.¹¹⁾

그는 남의 허물을 쉽게 이야기하는 법도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남에게 함부로 허용하지도 않았는데¹²⁾ 이는 그의 학자적인 성품의 소극적인 일면이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그의 성품에도 強毅한 일면은 있었다. 가령 그가 약관 23세의 나이로 (중종 18년, 1523) 성균관에 머무를 때는 기묘사화를 겪고 난 후였는데, 당시는 士習이 날로 부박해져 갔는데도 그만은 예법으로 스스로를 규율하였던 까닭에 남들이 모두 비웃었으나 그는 초

7) 同書 卷17, 9年 12月 己卯條

8) 宣祖修正實錄 卷4, 3年 12月 甲午條

9) 同上條

戒子寯曰 我死 該曹必循例請用禮葬 汝須稱遺令 陳疏固辭 且墓道勿用碑碣 只以小石題其面曰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

10) 明宗實錄 卷25, 14年 6月 辛丑條

11) 同書 卷14, 8年 6月 辛卯條 및 同書 卷18, 10年 2月 癸未條 參照

12) 同書 卷32, 21年 2月 丁丑條

연히 처세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¹³⁾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하한 권유나 만류도 과감히 뿌리치고 退官·歸鄉하는 강인성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오랜 관직생활을 통하여 일관되어 온 이상과 같은 그의 생활태도 내지 생활관은 때로는 그를 ‘淸簡之人’의 물망에 오르게도 하였고,¹⁴⁾ 때로는 ‘勤謹之人’으로 뽑히게도 하였다.¹⁵⁾ 그래서 명종조의 경연 侍讀官이었던 申汝宗은 그의 사람됨이 『문장은 餘事이고 操行이 심히 고상』하여, 『담백하기를 마치 布衣와 같아 立朝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營居하지 않을 정도였으니만큼 그를 崇獎하여 불러들일 것 같으면 士習에 크게 격려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⁶⁾ 또 領經筵事 尙震은 『몸 가짐이 淸苦하니 이런 인물은 부박한 세속을 격변시킬 만하다』고 하였다.¹⁷⁾ 그러므로 조정은 그가 귀향해 있을 때도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그의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요컨대 이황의 성품이나 생활태도는 인격의 도야나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인격자 내지 위대한 학자로서 그를 성장시키는 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를 신념과 정열을 가지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현실을 과감히 개혁해나갈 만한 탁월한 능력의 관리로는 성장시키지 못하였다. 또 막상 그 자신도 한 사람의 학자이기를 원하였지, 결코 한 사람의 관리이기를 희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13) 前掲의 言行總錄

弱冠遊國庠 時經己卯之禍 士習日趨浮薄 見先生所爲 人皆笑侮 先生不以易志 處之超然

宣祖修正實錄 卷4, 3年 12月 甲午條 參照

14) 明宗實錄 卷 12, 6年 11月 戊子條

15) 同書 卷13, 7年 11月 壬午條

16) 同書 卷18, 10年 3月 丙辰條

爲人 文章餘事 而操行甚高……淡如布衣 立朝已久 又不營居……必崇獎而召還 則士習激厲

17) 同書 卷20, 11年 5月 壬申條

2. 그의 관력과 관직관

중종 23년(1528) 28세 되던 해 봄 司馬試에 합격한 이후 이황은 과거를 위한 공부에는 달리 뜻을 두지 않았으나,¹⁸⁾ 주변의 권유에 의해 중종 29년(1534) 3월 34세의 나이로 式年文科에 應擧하여 乙科 第一名으로 급제함으로써 관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¹⁹⁾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選補되었다가 곧 藝文館 檢閱 겸 春秋館 記事官에 選拜되면서 그의 관직경력은 시작되었다.²⁰⁾ 그 후 그는 70세의 나이로 죽은 선조 3년(1570)까지 36년간의 관직생활을 겪게 되었다. 물론 그 사이에 자주 관직을 그만두고 하향한 일이 있었고, 더군다나 60세 이후에 있어서는 실제로 관직에 있었던 기간은 거의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원하였건 않았건 또는 그가 상경해 있었건 하향해 있었건 간에 그의 관직은 그 사이에도 쉴새없이 陞秩 또는 遞職되었던 만큼 그 모든 경력은 결국 그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그의 대체적인 관직경력이다.²¹⁾

權知承文副正字－檢閱－承文正字－著作－博士－典籍－戶曹佐郎－弘文副修撰－修撰－正言－持平－刑曹正郎－弘文校理－持平－弘文修撰－副校理－持平－典籍－刑曹正郎－弘文副校理－檢詳－舍人－掌令－典籤－掌令－司藝－司諫－司僕寺僉正－司成－禮賓寺副正－弘文校理－左弼善－掌令－

18) 退溪先生年譜 卷1, 嘉靖 11年 壬辰條

19) 同上 嘉靖 13年 3月條 및 國朝榜目 卷6 參照

20) 上掲의 年譜 卷1, 嘉靖 13年 4月條에 의하면, 당시 正言 權頤이 安處謙獄에 連坐되자 그의 형이자 이황의 妻父인 權頤 역시 連坐되었다. 그래서 臺諫에서는 逆臣의 女壻가 史官이 결코 될 수 없다 하여 그를 遞職시킬 것과 그를 薦擧한 藝文官 官員을 推劾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다. 그래서 그는 곧 承文院 副正字에 選拜되었었다.

그리고 中宗實錄 卷77, 29年 4月 丙辰條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諫院啓 檢閱李滉 逆人權頤同生兄頤之女壻 今爲定屬 滉決不可爲史官 請推藝文館官員 并遞李滉

21) 이 자료는 주로 그의 年譜 卷1·2에 依據하되 가능한 한 朝鮮王朝實錄에 散見되는 것과 對比하여 補完하였다.

直講-弘文校理-典籤-應教-內膳寺僉正-軍資寺僉正-應教-典翰-相禮-司甕院正-典翰-司僕寺正-校書校理-禮賓寺正-安東府使-應教-儀賓寺經歷-丹陽郡守-豐基郡守-弘文校理-執義-副應教-大司成-上護軍-大司成-副護軍-上護軍-刑曹參議-上護軍-僉知中樞府事-上護軍-僉知中樞府事-副提學-僉知中樞府事-大司成-上護軍-工曹參判-同知中樞府事-工曹判書-知中樞府事-禮曹判書-大護軍-同知中樞府事-知中樞府事-右贊成-判中樞府事-吏曹判書-判中樞府事-右贊成-判中樞府事- (贈 領議政)

위에 든 이황의 관직경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초기 10여년간의 경력에서는 홍문관과 사헌부의 경력이 주축을 이루고, 후기의 경력에서는 육조당상관의 경력이 散職을 제외한 實職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저한 진출경력을 가졌던 조선조의 관인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경력의 주경향이며, 또 그것은 지배층의 관직경력의 진로로는 비교적 전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그런데 전형적인 관직경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관인들이 대개 三司의 관직을 끝고루 경력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던 데 비하여 이황의 경우는 홍문관의 경력이 압도적이고 사헌부의 경우가 그 반 정도인데 대하여 사간원의 경력은 두 차례 정도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성품이나 생활태도에서 드러나듯이, 그에게서는 간관으로서의 적성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반대로 학자의 성품으로는 전형적이었다고 할 만한 그의 성품과 頻數한 홍문관의 경력과의 상관관계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중종 38년(1543)에서 명종 2년(1547)에 걸친 4년간 그는 司僕寺·禮賓寺·內詹寺·司甕院·儀賓寺 등 여러 관서의 閑職을 집중적으로 경력하였고, 명종 1년(1546)에서 7년(1552)에 걸친 기간동안의

22) 拙稿, 鮮初 文科 及第者의 진출에 관한 연구(啓明論叢 第5輯) 참조

그의 관직은 그 전시기에 비하여 오히려 降秩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을사사화를 전후하여 尹元衡·李樾 등 戚臣勢力이 정권을 좌우함으로 말미암아 사림이 스스로 정계에서 떨어져 갔거나 또는 타의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던 당시의 정치현실의 간접적인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의 實兄 李滄의 被禍에 의해 그 자신에게도 음성적인 피해가 주어졌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 후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그의 재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례는 꾸준히 있었으나 그의 관직은 현실적으로 눈에 떨 만큼 승직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²³⁾

세째, 그의 후기 경력에서는 上護軍·大護軍·副護軍 등 五衛의 遞兒職과 中樞府의 散職을 경력한 빈도가 매우 컸음을 볼 수 있다.²⁴⁾ 원래 五衛의 관직 가운데는 實職보다 遞兒職이 훨씬 많아 그 관직에는 실질상의 무관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는 있으나 녹봉이 없는 자 또는 직무는 없지만 특히 녹봉을 줄 필요가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황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를 실직에 기용하여도 늘 사직, 귀향해 버리는 까닭에 上揭의 遞兒職을 주어 그의 녹봉을 보장해 주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중추부의 경력이 頻數하였던 것은 그에게 散職을 제수함으로써 그가 하루 속히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는 배려에서 나온 조처였다고 보아진다.²⁵⁾

23) 물론 이와 같은 一連의 사실들은 前述한 그의 성품이나 생활태도에서 緣由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현실이 그로 하여금 늘 관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宣祖修正實錄 卷2, 2年 6月條에는 是時 上新政 圖治甚切 所登庸新進之士 皆宗主李滉 朋遊講學 自爲一隊 其論以挽回世道 激濁揚清爲尙 時人以小己卯目之 尹元衡·李樾黨類 多坐廢不調 怨憾入骨 而舊臣之有名望者 雖自以爲經歷世變 不失操持 而浮沈取容 富貴安佚已久 見新進之人 輕視前輩 詆爲流俗 皆懷不平 亦自爲一隊 尹李之黨 因而助爲流言 交煽兩間 欲朝廷撓亂이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의 세태를 잘 전해 준다.

24) 이러한 예는 그의 후배이지만 거의 동시대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栗谷 李珥나 西厓 柳成龍 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다. 그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황처럼 乞辭歸鄉하여 관직을 떠난 적이 있었다.

25) 明宗實錄 卷32, 21年 3月 丁未條에 의하면, 이황으로 하여금 弘文館 및 藝文

既述한 바와 같이 이황은 당초부터 관직에 별 뜻을 두지 않았지만, 주변의 권유가 간절하고 국왕의 徵召 또한 잦았으므로 마지못해 진출한 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田里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다.²⁶⁾ 그러한 그의 생각은 을사사화를 겪고 난후 더욱 굳어졌다. 그것은 그의 實兄이 被禍한 데서 오는 충격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여러 차례 예측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행위는 오히려 국왕의 관심을 더욱 환기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국왕의 徵召하는 빈도도 후일에 갈수록 그만큼 더 많아졌던 것이다.²⁷⁾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辭病歸鄉하는 일이 더욱 頻數해지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의 만년의 경력이 지니는 바와 같은 특징을 낳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그가 만년에 갈수록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은 그의 주장처럼 건강상태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래 그가 관직에 뜻이 없었던 데다가 사화의 충격과 세도의 쇠미, 풍속의 요란이 첨가되었던 때문일 것이다.²⁸⁾ 그래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류에게도 가능한 한 濁亂한 세속과 음모·질시로 가득 차 있는 정계로부터 떠날 것을 권유하였다. 가령 그가 奇大升과 같은 사람에게 자기네들을 싫어하는 원로대신과 노소를 이간하는 尹元衡·李

館의 大提學을 兼任케 하였다는 기록에 덧붙여 史臣은 자기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滉學問精深 踐履篤實 文章節行 表準一世 安於恬靜 不喜榮進 自中廟朝 屢辭屢起 家在禮安 身雖退去 朝廷尙虛其位 以示願致之意者 十餘年

26) 同書 卷14, 8年 4月 己亥條

不樂仕宦 每有歸田之志 上屢起之 故勉任于朝

27) 宣祖修正實錄 卷4, 3年 12月 甲午條

乙巳之難 幾陷不測 且見權奸濁亂 力求外補以出 既而兄瀆 忤權倖冤死 自是決意 退藏 拜官多不就……明廟嘉其恬退 累進爵徵召 皆不起

28) 同上條

上亦眷注特異 滉自以年已老 才智不足當大事 又見世衰俗澆 上下無可恃 儒者難以有爲 懇辭寵祿 必退乃已

樛의 잔당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여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권유한 것은 그 예이다.²⁹⁾

그런데 이황은 관직에 대한 자신의 이와 같은 태도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아가는 것이 공경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나아갈 수 없어서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공경스러운 것이 된다.³⁰⁾

라고 하여, 그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官職觀을 내세워서 변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恬退를 대신들은 그를 徵召하는 국왕의 성의 부족으로 돌려, 좀 더 극진한 예로써 그를 맞을 것을 建白하였다. 가령 史臣이

인군이 어진이를 존경하고 도를 즐기는 정성이 있을 것 같으면, 巖穴에 숨어 사는 선비도 역시 조정에 서기를 원할 터인 즉, 어찌 이황처럼 쉴 사이 없이 물러나기를 요구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는 이황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상감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³¹⁾

라고 한 것이나, 선조초의 승지 許曄이

예로부터 제왕은 어진 선비를 얻어 배운 뒤에라야 왕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황이 늘 병으로 사직하니 상감께서 공경과 예의를 다 하시어 師傅로 삼고자 하신다면 올 수 있을 것입니다.³²⁾

29) 註23) 참조

30) 《顯宗改修實錄》 卷21, 10年 8月 丁丑條에 의하면, 宋浚吉은 上疏하기를 善乎 先正臣李滉之言曰 可進而進者 進爲恭 不可進而不進者 不進爲恭 今臣亦曰 可承命而承命 則承命爲誠信 難承命而不承命 則不承命爲誠信이라 하였다.

31) 《明宗實錄》 卷25, 14年 4月 己酉條 人君有尊賢樂道之誠 則巖穴之士 亦將願立於朝 豈有求退不暇如滉者哉 然則非滉之退也 上之誠不足也

32) 宣祖修正實錄 卷1, 卽位年 10月條

라고 국왕에게 陳啓한 것은 그 단편적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이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던 奇大升은 도리어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황을 招致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를 신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책임을 너무 무겁게 지우거나 접대를 너무 후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책임을 너무 무겁게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학문이 모자란다고 하여 사양할 것이고, 접대를 너무 후하게 하면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³³⁾

그러나 史臣과 許曄의 의견처럼 특별로 대우를 했던 奇大升의 의견대로 적절한 대우를 했던 이황은 끝내 관직에 복귀할 뜻을 갖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가 당초부터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주위의 권유에 못이겨 진출하였고, 또 관직생활의 초기에 사화를 맞아 至親이 被禍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한 일이 있어서 정치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관직에 대한 생각을 버렸으며, 게다가 사화이후의 정계의 불안·동요와 세도의 타락 때문에 더욱 더 현실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였다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그가 지닌 성품이나 생활태도에다가 사화와 그 후의 세태의 불안이 첨가된 데서 결과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의 현실참여

이황의 성품이나 생활태도는 그대로 그의 관직생활에 반영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의 현실참여의 정도와 현실에 대한 기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의 현실참여는 학구활동을 통하여 성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진의 教誨를 통하여 먼 장래를

自古帝王 得賢士爲學然後 王業可興 李滉累辭病 上若致敬盡禮 欲以爲師 則可至矣

33) 孝宗實錄 卷20, 9年 1月 甲辰條의 贊善 宋浚吉의 上疏
臣偶見故儒臣奇大升告我宜廟之語 以爲招致李滉 唯信用之而已 責任毋太重 接待毋太厚 責任太重 則必以學問未至爲辭 接待太厚 則非唯不敢安 且有盡歡竭忠之嫌

기약하는 보다 위대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현실에서 보면 다소 소극적, 피동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배층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의 행정을 수행해나가는 한 사람의 관리로서 자기나름의 뚜렷한 정치적 경륜을 지니고 관직생활에 참여한 경우가 드물었으며, 따라서 그의 관직생활 자체도 산만한 양상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는 데는 자기나름의 뚜렷한 명분과 또 적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참여에는 늘 피동적이어서 불가피한 상황하에서만 이에 응하였다. 가령 『예조판서 이황이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이황이 누차 해직해 줄 것을 말하다가 해직된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버렸는데 당시는 국왕(명종)의 산릉을 조성하는 役事가 아직 끝나지 않았었으므로 더러는 그가 너무 앞질러 돌아간 것을 그르다고 하였다.』³⁴⁾ 는 史臣의 설명을 보면, 그는 자못 현실기피적이어서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그 자리를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인정상 차마 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의로움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여³⁵⁾ 스스로의 그와 같은 태도를 변명하였다.

뒷날 宋浚吉은 효종에게 『이황·이이 모두 儒賢이었으나, 주의는 달라서 이황은 물러나서 지조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이는 나아가서 도를 행하고자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황이 국사를 담당하기를 수궁치 않음을 늘 개탄하였읍니다.』³⁶⁾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황과 이이

34) 宣祖修正實錄 卷1, 卽位年 8月條

禮曹判書李滉 解官歸鄉 滉累辭 解職明日 不辭而歸 時山陵未畢 或以徑歸爲非

35) 同上條

奇大升 以書問之 滉答書有云 古之君子 明於進退之分者 一事不放過 小失官守 必奉身而亟去 彼其愛君之情 必有所大不忍者 然不以此廢其去者 豈不以致身之地 義有所不行 則必退其身然後 可以循其義 當此之時 雖有大不忍之情 不得不屈於義所掩也

36) 孝宗實錄 卷19, 8年 11月 庚戌條

浚吉曰……李滉·李珣 皆是儒賢 而主意不同 滉則欲退而守志 珣則欲進而行道

의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이처럼 대비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하였듯이 이황 자신은 현실참여나 그것을 통한 현실에의 기여에 대하여 자기나름의 명분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趙光祖를 주축으로 하는 신진사류들이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건의나 제도의 시행이 너무 날카롭게 드러났으며, 장황하고 점진적이 못 되어서, 젊어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의에 투합함으로써 분쟁을 불러 일으킨 점이 많았다고 하였다.³⁷⁾ 공자나 맹자, 정자나 주자같은 학문이 충만한 성현들도 周가 쇠망한 이후에는 왕도정치를 성취하지 못하고 겨우 『立言垂後』하는데 그쳤는데, 하물며 조광조가 아무 것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는 보았다. 왜냐하면 『立言垂後』하려면 학문이 충만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일생의 중년 내지 만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조광조는 그러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적소에서 죽었던 까닭에 그렇게 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조광조가 지니고 있었던 세 가지의 불행한 조건을 들기를

첫째는 불행하게도 관직이 너무 갑작스럽게 登擢되었고,
둘째는 불행하게도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세째는 불행하게도 謫居生活이 일생의 마지막이었다.

라고 하였다.³⁸⁾ 이러한 조건을 그는 곧 조광조 등의 被禍의 원인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被禍하기 전에 관직에서 물러났든지, 또는 그의 학문이 충족할 만한 연령이나 경지에 이르렀더라면 것처럼

每歎李滉之不肯 擔當國事耳

37) 退溪先生文集 卷48, 靜庵趙先生行狀 및 靜庵先生文集 附錄 卷6, 行狀
然而諸公之意 未免失於欲速 凡建白施設 鋒穎太露 張皇無漸 亦有年少喜事之人
投合時好 以鼓作紛紜者多

38) 同上條
一不幸而登擢太驟 再不幸而求退莫遂 三不幸而謫日斯終

급진적인 시정을 단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반대파와의 마찰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므로 화는 모면하게 되었으리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은 학문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개혁에 실패하여 堯舜三代의 至治나 왕도정치의 달성은커녕 스스로의 일생을 사화로 끝마쳤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황의 생각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조광조를 주축으로하는 신진사류들이 여러면에서 너무 급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당시의 현실과 마찰을 일으켜 실패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 원인은 급진성과 당시의 시대상 등 두 가지 요인에서 구해져야 하며, 급진성 또한 그들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들이 당시에 처하고 있던 입장에다 구해야 할 것이지, 결코 학문의 성숙여부에다 구할 일이 못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오·갑자 兩士禍를 겪고 난 후 士類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던 데 반하여 기성세력들은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반정을 통해 즉위한 중종은 연산군대의 탁정을 쇄신할 의욕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를 중용하게 되었고, 그들 또한 知己의 군주를 맞아 평소의 경륜을 펼 호기를 얻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던 『至治』의 실현에는 현실의 여러가지 제도나 기성 관료 세력이 저해요소로 간주되었으므로 급진적인 개혁과 구세력의 도태작업 등을 통하여 기성질서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賢良科의 설치도 따지고 보면 구세력의 도태에 대응하는 자파의 신세력 扶植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³⁹⁾

이와 같은 당시의 실정을 배제하고 신진사류가 현실의 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달리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가령 학문의 성숙 여부가 개혁과 그것을 통한 기여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실참여나 개혁은 학문이 완성의 경지에 이른 성현만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문의 완성을 위하여 암혈이나 산

39) 拙稿, 賢良科 研究 (啓明史學 第一輯) 參照

림에 문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참여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시폐을 바로잡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구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황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자기나름의 철저한 지도자관이요 현실관이기는 하여도 그것은 매우 고전적이고 현실 기피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황의 경우, 학문이 성숙해 가고 있던 중년 이후에 있어서 그의 현실 참여는 적극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기피도가 커지고 있었음을 볼 때, 그의 주장과 실제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조광조도 당초부터 관직에 별 뜻이 없었던 점에서는 이황과 다를 것이 없었다. 어찌면 당초에는 이황보다 현실에 대해 더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황은 자의든 타의든간에 式年文科에 급제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대기하고 있었지만, 조광조는 34세까지 文科에 赴學한 일이 없이 지내다가 그 해에 천거에 의해 관직에 오른 뒤 비로소 調聖文科에 應舉·급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관계에 진출한 후 두 사람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전혀 대조적이었다. 조광조는 천거로 造紙署 司紙에 敍任된 이래 賜死될 때까지 4년간 현실에 철저히 파고들어 시폐의 釐正과 제도의 개혁을 과감히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마찰이나 반발을 그는 조금도 회피함이 없이 극복해 나갔다. 심지어 그는 장차 닥쳐올지도 모를 사회를 예견하였으면서도 그것을 굳이 피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반하여 이황은 그의 관직생활의 초년에는 비교적 충실하게 관직에 재임했던 것 같으나, 중년 이후에 오면 사직·귀향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의 관직경력도 산만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관직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직에 머무르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 현실로부터 멀어질 기회를 늘 찾고 있었던 이황의 현실참여 태도는 조광조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현실참여 태도를 볼 때, 그가 현실의 時弊釐正이나 더 본질적인 의미의 개혁에 기여한 바가 컸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의 문집에는 甲辰乞勿絶倭使疏·戊午辭職疏·戊辰辭職疏一·同二·戊辰六條疏 등 다섯 가지의 上疏文과⁴⁰⁾ 戊辰經筵啓筭一·同二·進聖學十圖筭·辭免大提學筭子·乞解職歸田筭子·乞退筭子·乞致仕歸田筭子·同二·同三 등 아홉 가지의 筭子⁴¹⁾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그 외 經筵陳啓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 산견된다. 그런데 문집에 수록된 疏·筭거나 실록에 산견되는 陳啓거나 만년의 것이 대부분이고, 내용면에서는 사직에 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현실의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具申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명종초 대외외교관계에 언급하여 倭使를 막지 말 것과 대외외교는 強柔의 양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또 그는 經筵朝講에서 外方의 시장과 시민의 생계에 관하여 陳啓한 일이 있었다.⁴³⁾ 그러나 그가 시정의 입안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은 庶孽許通에 관한 의견 具申에서였다. 명종조에 와서 庶孽許通에 관한 문제가 廟堂에서 논의되었을 때, 대부분의 대신들은 許通의 부당함을 고집하였으나 그는

하늘이 한갓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인제는 귀천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先王들이 인재를 등용한 법은 다만 그 재주와 덕행의 우열을 보았을 뿐, 그가 태어난 근본의 여하를 논하지는 않았었다. 예로부터 名人·碩土로서 庶孽의 천한 신분에서 나와 奮世하여 간혹 공업을 세워

40) 退溪先生文集 卷6, 上疏

41) 同書 卷7, 筭

42) 明宗實錄 卷1, 卽位年 7月 丁亥條

本條에 수록된 그의 상소문은 그의 문집에 수록된 前揭의 甲辰乞勿絶倭使疏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甲辰은 중종 39년(1544)이고, 명종 즉위년은 乙巳年(1545)으로 一年의 차이가 있는데 그 正誤의 여부는 追考를 요한다.

43) 同書 卷6, 2년 9월 乙亥條

국가를 裨補한 이가 한 둘이 아니었는데, 오직 우리 나라만이 庶孽의 仕路에 진출함을 불허하고 있다.⁴⁴⁾

라고 하여, 庶孽許通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던 바, 같은 해인 명종 8년(1553) 庶孽 가운데서 良妾子에 한하여 과거 및 仕路에의 許通이 가능해졌고,⁴⁵⁾ 翌 명종 9년(1554)에는 庶孽許通節目を 마련키로 하였다.⁴⁶⁾ 이 문제는 뒷날까지 두고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된,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다.

그리고 선조 즉위초에 그는 조광조가 종종때 발탁되면서부터 被禍하기까지의 전말을 詳說하고는 그가 참소에 의해 희생되었을 뿐, 결코 죄가 없었음을 종종 자신이나 뒤를 이은 인종 등이 익히 알고 있었다고 陳啓하여, 그를 신원한 일이 있었는데⁴⁷⁾ 그 결과 조광조는 선조 1년(1568) 4월 영의정을 추증받게 되었다.⁴⁸⁾

또 그는 病辭하고 마지막 귀향을 하는 자리에서 선조에게, 오늘날 비록 치평한 것 같으나, 남북에 빈틈이 있고 민생이 困悴하니 환란에 대한 방비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언하였다. 이어서 그는 예로부터 군주의 초기의 정치는 대개 청명하지만 뒤에 가면 간관의 간쟁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또 간사한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군주의 뜻에 영합하게 되면, 올바른 사람은 착수할 곳이 없어서 奸黨들의 세상이 되는 법인 바, 지금은 新政의 초기라서 뜻을 급히 간쟁에 따르지만

44) 同書 卷15, 8년 10월 庚辰條

上護軍李滉議 天生一世 人材無間於貴賤 故先王用人之法 但視其才德之優劣 而不論其所出之如何 自古名人碩士 由庶賤而奮世 或至於立功業裨國家者 不可一二數 惟我東方 庶孽之人 不許通仕路

45) 同上 丙申條

傳曰……然庶孽許通 太祖·太宗朝事也 雖許通 勿敘顯職 則豈無等分乎

46) 同書 卷16, 9년 1월 乙巳條

禮曹判書鄭士龍啓曰臣年既衰耗不合長官 且近日爲庶孽許通節目 臣於嫡無子 只有孽產 磨鍊節目未安 請遞 傳曰 勿辭 庶孽許通節目 則使他堂上爲之

47) 宣祖實錄 卷1, 卽位年 11월 乙卯條

48) 同書 卷2, 1年 4月 丙申條 및 靜庵先生文集 附錄 卷5, 年譜

오랜 뒤 군상의 뜻이 바뀌게 되면 그 때도 오늘 같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하여 경계의 뜻을 밝힌 일이 있었다.⁴⁹⁾

요컨대 위에 든 몇 가지의 상소나 陳啓의 내용을 통하여 그는 외교·시장·인사·언로 등 시정의 해결에 직접 개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하였고, 국왕에 대한 그의 上疏·陳啓·筭의 상당수는 자기자신을 현실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의 행정에 대한 그의 기여가 컸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史臣이

이황이 이전에도 부르심을 받고 赴朝하였으나, 한 차례 啓覆하여 예에 따라 入侍한 뒤로는 召對·啓納의 이익이 없었다. 밖으로 그 이름을 흠모하였는데 內實이 정성스럽지 못하였다면 이황이 이제 온다 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⁵⁰⁾

라고 말한 것은 위의 사실을 매우 적절하게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IV. 결 어

여말의 향리에서 출발하여 선초에 와서 가까스로 양반의 반열에 끼였

49) 《宣祖修正實錄》 卷3, 2年 3月 乙巳條

上曰 卿今歸矣 乃有所欲言者乎 滉對曰……今世雖似治平 南北有釁 生民困悴 不可謂無可憂之防也 上復問所欲言 對曰……自古人君 初政清明 正人見用 君有過則諫 有失則爭 人主必生厭苦之意 於是奸人 乘隙而逢迎之 人主之心 以爲若用此人 則吾所欲無不如意 自此與小人合 而正人無着手 處然後 奸臣得志 無所不至矣 今新政之初 凡所諫諍 皆屈意從之 無大過矣 久而聖心或移 安能保其如今日乎

50) 《明宗實錄》 卷32, 21年 4月 辛未條

史臣曰……滉前此 亦承召赴朝 然一度啓覆 隨例入侍之後 別無召對啓納之益 外慕其名 內實不誠 則滉今雖來 抑有何助

던 스스로의 가문을 혁혁한 門地로 승격, 정착시킨 퇴계 이황은 일생의 학구생활을 통하여 성리학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을 세움으로써⁵¹⁾ 당시의 학자나 유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⁵²⁾ 그리고 관리로서의 청렴하고 조심스러운 그의 생활은 그를 ‘勸謹之人’으로 또는 청백리로⁵³⁾ 만듦으로써 여러 사람의 숭앙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당시의 국왕이나 신료들로부터 아낌을 받았고, 따라서 그들은 그를 늘 국왕의 측근에 두고 고문의 임무를 맡기고자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다.⁵⁴⁾ 그러나 그는 국왕이나 신료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늘 사직, 귀향할 것을 희망하였고, 따라서 그의 관직생활은 공백기가 많은 산만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늘 현실에서 멀리 떠나 鄕曲에 숨고자 노력한 것은 중종기의 기묘사화와 특히 그의 형이 被禍한 을사사화로 인한 직접적 충격과 사화 후의 土習의 퇴폐 및 세도의 탁란에 말미암은 점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사화를 겪고 난 뒤 사람에는 현실의 정계를 떠나서 鄕曲에 숨어 살려고 하는 현실기피적·은둔적인 풍조가 생겨나서 이황처럼 출사에 신중을 기하거나 출사를 완전히 체념하는 인물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었다.⁵⁵⁾

51) 《宣祖實錄》 卷7, 6年 11月 壬寅의 府啓

贈領議政李滉 篤信好學 理明義精而爲德行 發而爲事業 其扶植斯文維持吾道之功 實東方所未有也

同書 卷20, 19年 2月, 工曹正郎 趙穆의 陳疏

臣師臣李滉……故其發於詩文論辨者 皆所以淑人心而扶世道 承前聖而啓後蒙也

52) 同書 卷 196, 39年 2月 辛亥의 領經筵事 沈喜壽의 陳啓

李滉……承召而來 館學諸生 雖不得相與講論 而竦然有所矜式 仰之如山斗 信之如神明 故土習丕變 人皆激昂

53) 《清選考》 卷7, 清白條

54) 《明宗實錄》 卷7, 3年 1月 庚寅의 司憲府 上啓

同書 卷17, 9年 8月 辛未의 領經筵事 尹漑의 陳啓

同書 卷20, 11年 3月 庚辰의 史臣의 記錄

55) 《宣祖修正實錄》 卷20, 19年 10月 趙憲의 上疏

당시 그러한 인물로는 李滉 외에도 成守琛·成渾·林億齡·徐敬德·金麟厚·曹植·李恒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보다 본질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곧 그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의 성품에는 다소 소극적, 피동적인 일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를 스스로의 학문의 성취와 인격의 수양에 만족하는 학자형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폐의 釐正이나 시정의 개혁에 공헌할 만한 탁월한 능력과 강렬한 참여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관료형 인간으로 그를 성장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는 학문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성리학을 확고한 기반 위에 정착시키고 또 그 차원을 높이는 데 공헌함으로써 후대에까지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가 성취한 학문을 현실에 도입하여 정치적 경륜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끌고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자기가 터득한 학문의 지식을 현실에 도입하여 온갖 시대적, 인적 악조건을 무릅쓰고 『至治』의 현실을 꾀하다가 마침내는 스스로의 被禍를 자초하였던 조광조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광조가 적극적·능동적·현실참여적인 특징이 강한 관료형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이황은 純粹·謙虛·恬靜·明白한 성격의 학자형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史臣이

이황의 才調나 器局은 비록 조광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義理(性理學의 學理)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정미함을 다한 것에 이르면 조광조의 미칠 바가 못된다.⁵⁶⁾

라고 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인물평으로는 的確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황의 성품·생활태도라든가, 관직관·현실참여태도·업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탁월한 행정능력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지닌 훌륭한 관료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성실성과 沈潛性을 지니고 학문에

56) 同書 卷4, 3年 12月 甲午條

澁才調器局 雖不及光祖 至深究義理 以盡精微 則非光祖之所及矣

집착하여 성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또 후대에까지 큰 영향력을 지닌 훌륭한 학자였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